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78
----------	-----

제출년월일 : 199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 제공으로 여성사회참여활동촉진 및
능력개발로 자아실현과 기술교육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지원으로
가계안정을 도모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교육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4블럭3,4롯트에 둔다(제3조).
- 나.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제4조).
- 다.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제9조제1항).

파주시여성회관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전시실, 강의실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 난방기등)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등 기타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여성회관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동 74블럭 3,4롯트에 둔다.

제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3. 정부시책사업 계몽지도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5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8조(강사초빙) ①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대강당	오 전	50,000 08시-12시	○ 토,일,공휴일,야간은 기준액의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한다. ○ 익일공연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한다. ○시청각실은 대강당의50퍼센트로한다
	오 후	60,000 13시-18시	
	야 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전시실	오 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 후	15,000 13시-18시	
	야 간	20,000 18시-22시	
	1 일	30,000	
강의실	오 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식당사용은 1회에 50,000원 한다.
	오 후	15,000 13시-18시	
	야 간	20,000 18시-22시	
	1 일	30,000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계약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초과: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초과: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초과: 다음회의 사용료전액			

2.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매시간 초과 시 마다당해 기 준 요액의20퍼 센트 초과요율 만 추가징수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 명	일 반	1회 2시간	10,000원	
	종 합	1회 2시간	15,000원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대 강 당	1 회 (2시간)	50,000원	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 해 기준요액의 20% 초과요금만 추가 징 수
전 시 실	1 회 (1 일)	20,000원	
회 의 실	1 회 (2시간)	10,000원	

4. 유아 수탁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교육수강생자녀	1인 / 1월	15,000원	오전,오후반운영

5.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15,000원	0.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0.교육기간이 1월미만 인 경우에도 10일 이상일 때에는 1월 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15,000원	
특별(교양)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15,000원	
주 부 대 학	1인 1개월	10,000원- 15,000원	

파주시 여성회관 시설현황

□ 일 반 현 황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74브릭 3,4롯트
- 면 적 : 대지 4,081m²(건축연면적 4,137.91m²)
지하1층, 지상3층

○ 공사기간

- 착 공 : '97. 11. 12
- 준공예정 : '99. 6. 30

○ 사 업 비 : 5,377백만원(도비 2,190 시비 3,187)

□ 시 설 규 모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비 고
지하1층	284.77평	양재실,도배실,알뜰교환실 건강교실,샤워,탈의실. 기계발전실	
지상1층	365.45평	유아실,탁아실,교사실, 강의실,사무실,여협실, 상담실	
지상2층	301.90평	미용실,어학실,컴퓨터실, 요리실,제과제빵실,식당	
지상3층	299.57평	대강당,시청각실,예절실, 서예실,강의실,자료실	